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
시행규칙 제정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연 월 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제정이유

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·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(법률 제19847호, 2023.12.26. 공포, 2024.4.27. 시행)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, 행위허가 신고,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, 총괄사업관리자 신청, 비용지원 신청,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특별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특별정비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보조 또는 용자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바. 특별정비구역 지정·변경·해제, 사업시행자·총괄사업관리자 지정, 선도지구 지정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(안 제7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타 : 시행령안 입법예고 중(2024. 2. 1. ~ 3. 12.)

##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)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제3조(행위허가 신고)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제4조(사업시행자 지정신청)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제5조(총괄사업관리자 신청) 영 제27조제2항의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
제6조(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) 영 제29조제3항의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
제7조(토지등소유자 동의)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3항제4호의 동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

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5조,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 
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## 특별정비구역 지정·변경·해제 제안서

[ ] 지정  
 [ ] 변경  
 [ ] 해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제안자	성명(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
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전화번호	
	주소		

특별정비구역 지정개요	구역명	
	지정 필요성 및 목적 (변경·해제 사유)	
	지정의 기대효과	
	사업시행자	
	사업방식 (근거법률)	
	위치	
	면적	m <sup>2</sup>
	특별정비구역 유형	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, 제15조,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정비구역의 지정·변경·해제를 제안합니다.

년 월 일

제안자 (서명 또는 인)

###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구역 내 토지 현황							
번호	행정구역	지번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지분	소유자명	비고
1							
2							
3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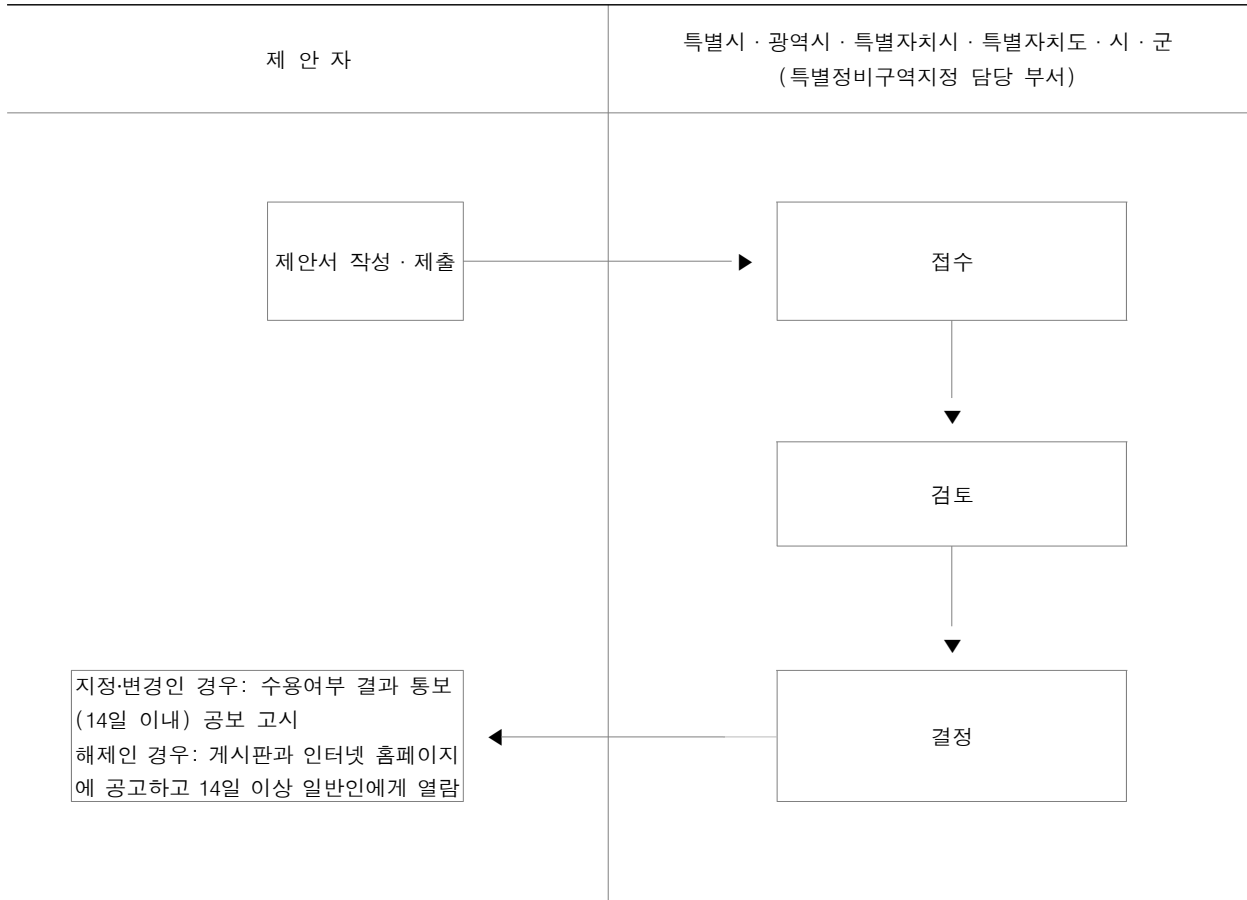
구역 내 건축물 현황								
번호	행정구역	지번	종류	동·호수	면적(㎡)	지분	소유자명	비고
1			아파트					
2			단독주택					
3			단독주택					

첨부서류	1.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(신분증명서: 주민등록증, 여권 등의 사본을 포함) 2. 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(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형도면을 포함합니다) 3. 특별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설명서 4.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시행하는 해당 사업에서 제안(계획입안, 구역지정 등)과 관련된 서류	수수료  없음
------	--	---------------

**유의사항**

○ 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(間印)을 하여야 합니다.

**처리절차**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## 특별정비구역 행위허가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		
신고인	성명(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	
	주소	전화번호		
허가 사항	허가대상 등	구역명 및 위치(지번)	허가 연월일	
	행위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물 건축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작물 설치	<input type="checkbox"/> 토지형질변경
		<input type="checkbox"/> 토지분할	<input type="checkbox"/> 물건적치	<input type="checkbox"/> 토석의 채취
	상세내용	※ 허가서에 기재된 상세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		
	허가조건	※ 허가서에 기재된 상세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		
허가기간	. . . . .부터 . . . . .까지			
허가 변경사항 <small>※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</small>	변경내용			
	변경조건	변경 연월일		
착수 연월일		완료 연월일		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사실을 신고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**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** 귀하

첨부서류	1.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신고일 기준시점의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은 서류 3.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	수 수 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

##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	
신 청 인	성명(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	
	주소		전화번호	
신청구역	구 역 명	시행면적	㎡	
	위 치			
사업계획	사업목적			
	사업개요			
	사업방식 (근거법률)	사업기간		
	자금계획	총 액	천원	
		국내자본	천원	
외국자본		천원		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후 계획도시정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** 귀하

구역 내 토지 현황							
번호	행정구역	지번	지목	면적(㎡)	지분	소유자명	비고
1							
2							
3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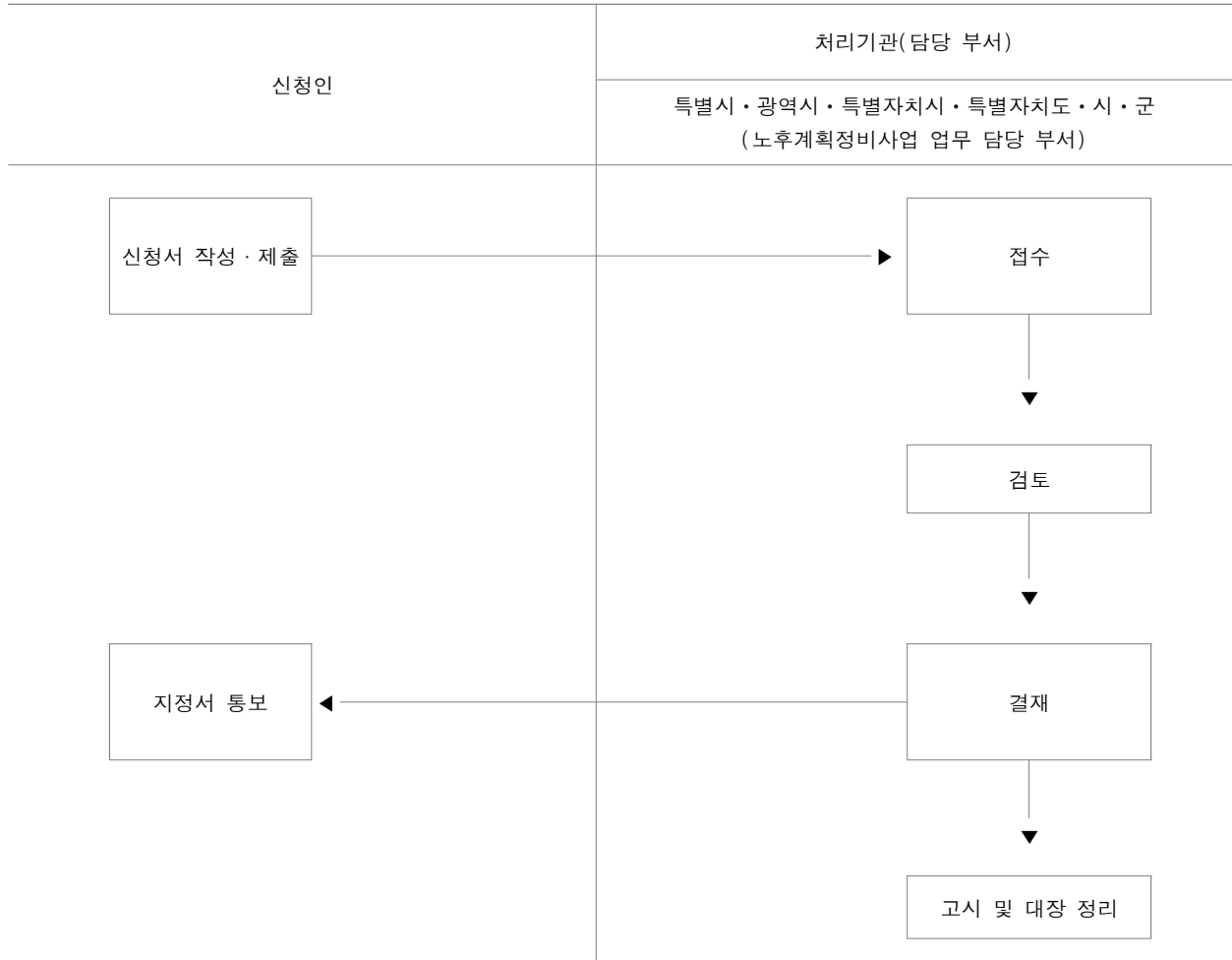
구역 내 건축물 현황								
번호	행정구역	지번	종류	동·호수	면적(㎡)	지분	소유자명	비고
1			아파트					
2			단독주택					
3			단독주택					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 2. 자금조달계획서 3. 「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(신분증명서: 주민등록증, 여권 등의 사본을 포함) 5.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	수수료  없음
------	--	---------------

**유의사항**

○ 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(間印)을 하여야 합니다.

**처리절차**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증질지(80g/㎡)]

##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60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			
	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전화번호	
	주소			

신청구역	구역명		관리면적	m <sup>2</sup>
	위치			
	사업방식 (근거법령)		사업시행자	

총괄사업 관리개요	유사사업수행 실적					
	총괄사업관리자 업무범위 및 내용					
	총괄사업관리기간	년	월	일부터	년	월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** 귀하

제출인(대표자)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수행계획서</li> <li>2. 재건축·재개발사업 등 총괄사업관리와 유사한 수행실적서</li> <li>3. 그 밖에 총괄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서류(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

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비용 [ ] 보조 [ ] 용자 지원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	접수일		
신청인	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		법인등록번호		
	주소		(전화번호: )		
정비 사업 개요	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소재지				
	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명				
	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착수 및 완료예정일				
	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면적				
	총 사업비				
신청 내용	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이유				
	지원 신청 금액	보조금	원(총 사업비의 %)		
		용자금	원(총 사업비의 %)		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비용 또는 업무수행비용의 보조·용자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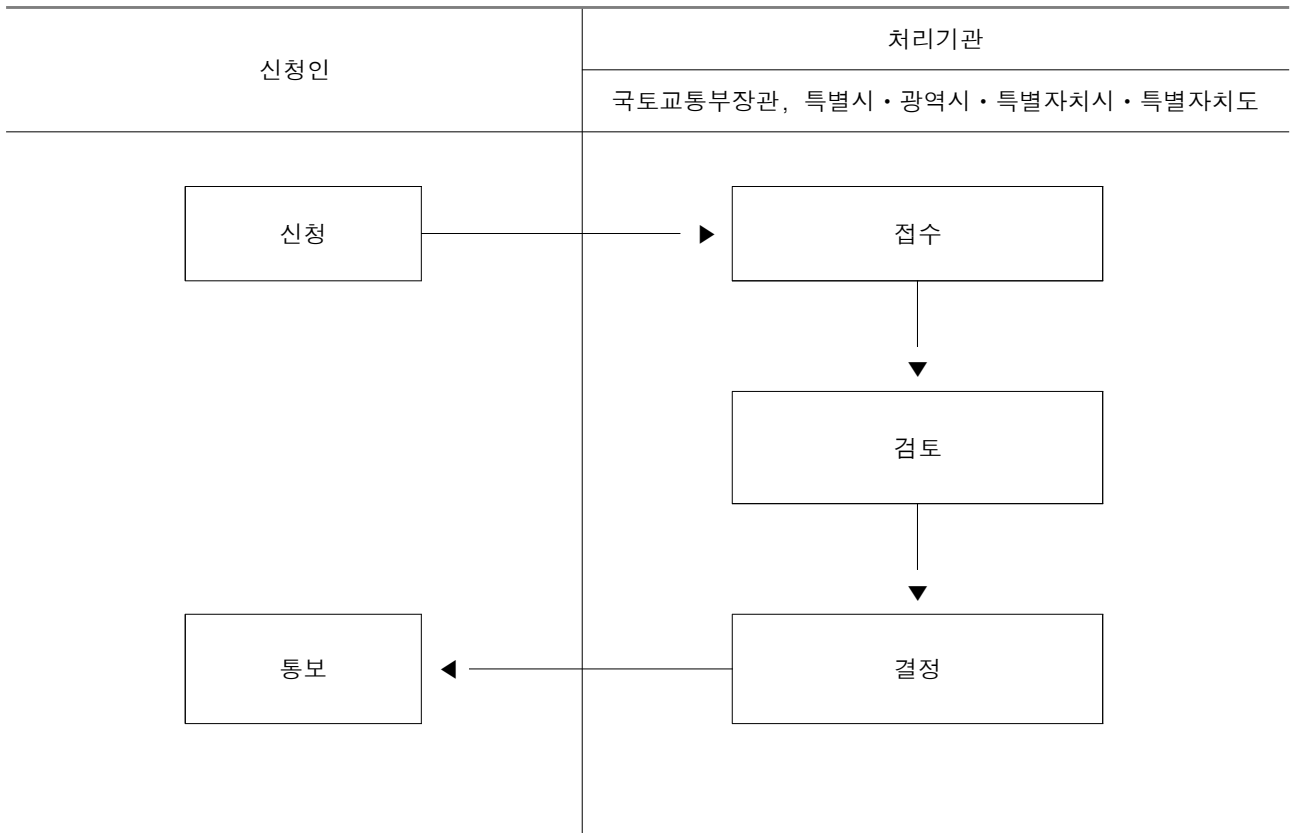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날인)

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업무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</li> <li>2.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사용계획서</li> <li>3. 용자금의 상환계획서(용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</li> <li>4.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</li> <li>5.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

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

##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동의서

특별정비구역	[ ] 지정	[ ] 해제	[ ] 총괄사업관리자	기타
	[ ] 변경	[ ] 분할	[ ] 사업시행자	[ ] 선도지구
	[ ] 통합	[ ] 결합		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 일자
------	-------

동의자	성명(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
소유권 현 황	토 지 (총 필지)	소 재 지 (공유 여부)	면적(m <sup>2</sup> )
		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	건 축 물 (종류: 상가, 아파트 등)	소 재 지 (허가 유무)	동 수
		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	지 상 권 (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)	설 정 토 지	지상권의 내용
등기상 건축물 지분 (면적 m <sup>2</sup> )		등기상대지 지분 (면적 m <sup>2</sup> )	

동의내용	특별정비구역 지정, 변경(분할·결합·통합 포함), 해제		
	구역명		
	위치		
	구역면적		
	선도지구 지정		
	예정구역명		
	위치		
	예정구역면적		
	사업시행자 지정		
	성명(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	주소	
	총괄사업관리자 지정		
	성명(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	주소	

※ 동의하는 사항만을 작성하며, 변경된 내용을 작성 시에는 변경 전·후 내용을 모두 작성 합니다.

본인은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, 제15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·변경·해제 등, 총괄사업관리자 지정, 선도지구, 사업시행자 위 내용에 대하여 제안자 등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(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협의 및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, 제9조,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동의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동의자

(자필로 이름을 써넣음)    지장날인

**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** 귀하

첨부서류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여권 등) 사본 1부.

유의사항

○ 소유권 현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(間印)을 하여야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 또는 중질지 80g/m<sup>2</sup>]